

부 산 가 정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13드합○○○ 이혼등
원 고 정AA

피 고 이BB

변 론 종 결 2014. 9. 18.

판 결 선 고 2014. 10. 2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재산분할로 369,297,73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혼인 및 가족관계

원고와 피고는 1980. 12. 6. 결혼식을 올리고 1981. 4. 14.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그 사이에 성년이 된 딸 정CC(19**. *. **.생), 정DD(19**. *. **.생)를 두었다.

나. 교통사고 이전 혼인생활

1) 원고는 1995년경까지 운전기사, 부동산중개업, 개인택시 운전 등을 하며 도박을 일삼았는데 그 과정에서 차를 담보로 돈을 빌리거나 도박 빚을 변제하기 위하여 소유 하던 아파트를 팔기도 하였다. 피고는 부업이나 장사를 해서 원고의 도박 빚을 갚으며 가게를 꾸려나갔는데 원고와 도박 문제로 자주 다투었고 그 과정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폭력을 행사한 후 가출하여 수일 내지 수개월간 귀가하지 않는 일이 잦았으며 원고는 가출할 때면 월급통장의 비밀번호를 바꾸어 피고와 딸들의 생계를 어렵게 하였다.

2) 원고는 2005. 12. 11.경 계모임에 갔다가 늦게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피고를 주

먹으로 폭행하여 피고로 하여금 치아파절 및 다발성 타박상을 입게 하였고, 2006년경에도 폭력을 행사하여 2006. 5. 26.경 피고 앞으로 '나(원고)는 피고와 딸들을 때리지 않는다, 나는 술 마시고 집에 와서 화를 내지 않는다, 나는 술을 먹고 집에서 물건 또는 세간을 부수지 않는다, 나는 절대 집을 가출하지 않으며 12시간 안에 귀가한다...나는 아내 몰래 월급통장 비밀번호, 도장을 바꾸지 않는다...나는 모든 사람에게 돈을 빌리지 않고 일수돈도 쓰지 않는다, 나는 아내 몰래 회사에서 가불하지 않는다, 나는 돈 주고 하는 모든 오락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주었다.

다. 교통사고 이후 혼인생활

1) 원고는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여 오던 중 2008. 5. 25. 자신의 승용차로 출근하던 길에 교통사고를 당하였고, 위 사고로 인하여 경추부의 심각한 손상을 입고 경추하 사지마비로 2년 10개월 정도 입원치료를 받았다. 피고는 원고가 중환자실에 있는 동안 극진히 간호하였고 원고가 재활병동으로 옮겨 치료를 받는 중에는 간호사인 두 딸과 함께 3교대로 원고를 간호하였다.

2) 원고는 2011. 3. 4.경 퇴원하여 통원하며 재활치료를 받기 시작했는데 피고는 집에서 목욕과 식사, 배변활동을 돕는 등 원고를 보살피고 원고와 동행하여 매주 월, 수, 금요일은 병원 물리치료, 화, 목요일은 지압원에 마사지를 받으러 다니고, 집 앞에서 원고의 보행연습을 시키는 등 원고 옆에서 항상 원고를 수발하였으며 2010. 5.경 원고를 위하여 요양보호사 자격증도 취득하였다.

3) 피고는 집안에서 지내는 원고가 답답할까봐 원고를 데리고 나와 인근 공원이나 동백섬 등지를 자주 산책하였고, 원고와 피고는 딸들과 함께 2011. 9.경부터 2012. 10.경까지 제주, 강원도, 양산, 통영, 거제, 진해, 전라도, 남해, 울산, 경주, 합천, 밀양 등

지를 여행하였다.

4) 원고는 당초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불승인처분을 받았다가 피고와 딸들의 적극적인 권유로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하였고, 2010. 8.경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등을 지급받기로 하고 소를 취하하였다.

5) 원고는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2010. 9.경부터 2013. 3.경까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 요양급여, 상병연금, 간병료 등으로 함께 258,840,860원을 지급받았고, 사고보험금 등으로 6억 원 상당을 지급받았으며, 피고는 2010. 8. 28. 위 돈으로 부산 ○○구 ○동 ○○ ○○아파트 ○○동 ○○호(이하 '○○아파트'라 한다)를 2억 7,500만 원 매수하고, 원고의 재활치료비, 가족생활비, 여행경비를 비롯한 제반경비를 지출하였다.

라. 원고의 가출

1) 원고는 2013. 2. 18. 피고와 함께 병원에 물리치료를 받으러 갔다가 피고 몰래 병원을 빠져나와 3일간 가출하였다가 귀가하였다.

2) 원고는 2013. 3. 27.경 피고와 함께 병원 물리치료를 받으러 갔다가 다시 피고 몰래 병원을 빠져나왔고 그로부터 현재까지 원룸에 거주하며 형제들의 도움으로 생활하고 있다.

3) 원고는 2013. 4. 4. 이혼 등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나, 피고는 이혼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1~3, 5, 7호증, 제11호증의 1, 2, 제12호증의 1~8, 제13호증의 1~12, 제14호증의 1~3, 제15~17호증, 을 제1~3호증, 제4호증의 1, 2, 제5호증, 제6호증의 1, 2, 제7호증, 제8호증의 1~5, 제11호증의 1, 2, 제12호증의 각 기재, 을 제9호증의 1~55

의 각 기재 및 영상, 을 제10호증의 영상, 가사조사관의 조사보고서,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혼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교통사고로 입원하여 있는 원고에게 욕설과 폭행을 하였고, 통원치료를 받게 되자 집 안에서 더욱 심하게 원고에게 욕설과 폭행 등 학대를 일삼았으며, 원고와 상의 없이 원고가 지급받은 보험금 등으로 ○○아파트를 매수하는 등 원고를 부당하게 대우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피고의 혼인관계는 더 이상 이를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으므로 민법 제840조 각 호의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피고의 부당대우 여부

피고가 장애로 거동이 불편한 원고에게 폭언, 폭행 등 가혹행위를 하였는지 보건대, 갑 제10호증의 1~4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병원과 집에서 원고에게 학대에 가까운 폭언과 폭행을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피고가 원고와 상의 없이 ○○아파트를 매수하였는지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갑 제7호증의 기재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0. 8. 28. 원고가 지급받은 보험금 등으로 ○○아파트를 매수하여 2010. 9. 10. 정DD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정DD의 처분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 아파트에 근저당권자 정CC, 채권최고액 3억 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사실, 위 아파트의 잔금지급일자인 2010. 9. 10. 당일 원고는 오전 10시경 및 오후 4시 20분경 모두 병원에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와 상의 없이 ○○아파트를 매수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는 '2010. 8.경 피고, 딸들과 함께 부동산중개사무실을 방문하여 ○○아파트 32평형 및 39평형을 둘러보고 39평보다는 32평이 낫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을 자인하고 있는 점, 위 아파트의 중개인이었던 심EE은 원고가 2010. 8.경 피고와 함께 부동산중개사무실을 방문하여 ○○아파트 32평형으로 계약하라는 말을 하였고, 2010. 9. 10. 매매잔금을 치르는 자리에도 원고가 동석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가 원고 몰래 ○○아파트를 매수하기로 하였다면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 되는데도 정DD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정CC가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하는 번거로운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고, 오히려 위 등기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도박 전력으로 모든 재산관리는 피고가 하여 왔는데 원고가 위 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 앞으로 마치는 것을 싫어하여 부득이하게 정DD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정CC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게 된 것'이라는 피고의 주장에 설득력이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원고와 상의하여 ○○아파트를 매수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의 부당한 대우로 원·피고의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의 존부

가) 민법 제840조 제6호에 정한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하며,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혼인계속의사의 유무, 파탄의 원인에 관한 당사자의 책임 유무, 혼인생활의 기간, 자녀의 유무, 당사자의 연령, 이혼 후의 생활보장, 기타 혼인관계의 여러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므1140 판결 등 참조).

비록 원고와 피고가 2013. 3.경부터 현재까지 별거하고 있고, 원고는 몸은 반신불구로 불편하지만 부모 형제의 도움을 받거나 간병인을 두고 지낼 수 있어 별거 이후 마음이 편하다며 이혼을 계속 원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는 원고가 집을 나가 이혼을 구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고 원고와 이혼할 의사가 없다고 표시하고 있는 점, 아래에서 인정된 사실관계 및 원고와 피고의 혼인기간, 원고와 피고의 나이, 원고와 피고의 별거 경위 등을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의 부부공동생활관계가 더 이상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원고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나) 설령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되었다고 하더라도,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하여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그 파탄을 사유로 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 없고, 다만 상대방도 그 파탄 이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함에도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아니하고 있을 뿐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4므137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피고가 원고를 힘들게 간병하는 과정에서 원고에게 다소 짜증섞인 말을 하였거나 원고의 건강상 이유 내지 기타 사정으로 원고의 요구사항을 거절하거나 행동을 제약하는 과정에서 원고를 구박하는 말을 하는 등으로 심신이 예민해진 원고로 하여금 학대받는다고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는 느낌을 주었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는 원고가 교통사고를 당한 이후 5년 동안 줄곧 원고의 곁을 지켜오면서 2년 이상 병원에서 원고를 간병하였고 집에서도 원고의 일상생활을 위한 모든 활동을 보조하고 원고를 전면적으로 보살피며 재활에 적극적인 도움을 준 점, 원고는 피고의 도움으로 건강을 상당부분 회복하였고 현재 타인의 도움을 받아 서거나 걸을 수 있을 정도로 장애상태가 크게 호전된 점, 피고는 거동의 제약으로 답답함을 느끼는 원고를 위하여 2011년부터 2012년까지 수차례에 걸쳐 전국을 다니며 가족여행을 하는 등 장애가 있는 원고를 배려하고 헌신하여 온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행동은 힘겨운 간병과정에서 저지른 인간적인 실수에 불과할 뿐 원고에 대한 증오심의 발로라거나 원고를 괴롭히려는 고의적 행동이라고 볼 수 없다.

오히려 앞서 본 것과 같이 2006년경까지 잦은 도박으로 가정에 소홀하고 피고에 대한 폭행 및 가출을 일삼았으며 교통사고를 당한 이후 피고의 간병으로 건강을 상당부분 회복하였음에도 2013. 3.경 집을 나가 혼인생활을 포기해버린 원고의 잘못이, 장애로 심신이 예민해진 원고의 마음을 충분히 헤아리지 못한 위 피고의 잘못보다 더 크다고 할 것이다. 또한 피고가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에도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볼 증거도 없다.

다) 따라서 유책배우자인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혼 청구는 이유 없다.

3.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이혼 청구가 이유 없는 이상 이를 전제로 하는 위 청구 역시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문희

 판사 백소영

 판사 조수진